

대구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가단1374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 별지1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소외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2020. 4. 1. 체결된 대물반환예약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 7. 6. 접수 제2993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별지1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가. 소외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2020. 4. 1. 체결된 대물반환예약 계약을 취소한다.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 9. 10. 접수 제4192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판사 남근욱

별지1

목 록

1. 경상북도 경산시 C 공장용지 429㎡
2. 경상북도 경산시 D외 1필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공장
1층 일반철골구조 일반공장 480㎡
1층 일반철골구조 일반공장 96㎡
2층 일반철골구조 일반공장(창고) 248.6㎡
부속건물
1층 철골콘크리트구조 일반공장(사무실) 180㎡
2층 철골콘크리트구조 일반공장(사무실) 180㎡
3. 경상북도 경산시 D 공장용지 2252㎡ -이상-

별지2

청 구 원 인

1. 지급명령

원고는 소외 B(이하, '소외회사'라고 합니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2차전1307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22. 8. 22.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882,933,086원 및 위 금원 중 81,059,416원에 대하여 2021. 12. 22.부터 금799,307,922원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2. 9. 6. 확정되었습니다.

2. 신분관계 등

소외회사는 원고의 채무자이고, 피고는 소외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3.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대물반환예약의 체결

가. 별지목록 기재 1,2부동산에 대하여, 소외회사는 2020. 4. 1. 피고와의 사이에 대물반환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 7. 6. 접수 제29939호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나. 별지목록 기재 3부동산에 대하여, 소외회사는 2020. 4. 1. 피고와의 사이에 대물반환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 9. 10. 접수 제41925호로 소

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 다. 부동산등기부상에는 위 대물반환예약이 2020. 4. 1.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일시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1. 7. 6. 및 2021. 9. 10.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경료된 상황에 비추어볼 때, 위 대물반환예약의 실제 계약 체결일은 2021. 7. 6.이나 2021. 9. 10.로 봄이 상당하다할 것입니다.

4.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대물반환예약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아직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구상금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이 위와 같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21. 11. 9. 소외회사가 대구지방법원 2021회합126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나. 소외회사의 무자력

위 대물반환예약이 체결될 당시, 소외회사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제외하고도 타에 채무가 많아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습니다.(소외회사는 대구지방법원 2021회합126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다. 사해행위

이미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는 소외회사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반환예약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채권자에게만 채권만족을 하게 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 층 더 부족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5. 결 론

가. 별지목록기재 1,2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20. 4. 1. 체결된 대물반환예약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B에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 7. 6. 접수 제2993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 별지목록기재 3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20. 4. 1. 체결된 대물반환예약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B에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 9. 10. 접수 제4192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끝.

